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3424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1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 중 “학생”을 “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<u>학생</u> 의 학습기회 확대,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	제53조(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) ----- ---- <u>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</u> (「 <u>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u>학교 밖 청소년</u> 을 말한다)----- -----.